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3781 청구이의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1. [redacted]군

2. [redacted]시

3. [redacted]중앙회

4. [redacted]보험주식회사

5. 주식회사 [redacted]씨(변경 전 : 주식회사 [redacted]공사)

6. 주식회사 [redacted]씨

7. 주식회사 [redacted]은행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1. 원고들의

가. 피고 [redacted]중앙회에 대한 소 중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가단 39038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92,348,930원에 관한, 망 E 및 원고 A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2. 8. 23.자 2002차587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23,087,236원에 관한,

나. 피고 [redacted]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전주지방법원 2003. 5. 30. 선고 2002가단 15339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46,221,036원에 관한,

다.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씨에 대한 소 중 전주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가단4165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12,032,243원에 관한,

라.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에 대한 소 중 원고 A, C, 주식회사 [redacted]개발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2001. 12. 6. 선고 2001가단 23169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106,713,300원에 관한, 원고 C, 망 E, 망 F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 5. 30. 선고 2000가단 660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운데 19,790,552원에 관한

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redacted]중앙회의 소외 망 E에 대한 2002. 8. 23.자 전주지방법원 2002차 587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47,166,298원 및 그 중 19,731,709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36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나.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범위에서 원고 A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원고 A, C, 소외 주식회사 [redacted]개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 12. 6. 선고 2001가단23169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6,713,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4.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망 E, 망 F, 원고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 5. 30. 선고 2000가단660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가.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19,790,55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나.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범위에서 원고 A가 위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5. 원고들의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 주식회사 [redacted]씨(변경 전 : 주식회사 [redacted]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redacted]중앙회, [redacted]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씨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 [redacted]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redacted]씨(변경 전 : 주식회사 [redacted]공사), 주식회사 [redacted]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redacted]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redacted]중앙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1. 원고 A에 대한,

가. 피고 [redacted]중앙회의 소외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나. 피고 [redacted]중앙회의 원고 A 및 위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다. 피고 [redacted]보험 주식회사의 원고 A, C, 소외 G, 위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5339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라.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씨의 위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1657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마.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원고 A, 소외 주식회사 [redacted]개발, 원고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바.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위 망 E, 원고 C, 소외 망 F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 B, C, D에 대한

가. 피고 [redacted]중앙회의 소외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나. 피고 [redacted]중앙회의 원고 A 및 위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다. 피고 [redacted]보험 주식회사의 원고 A, C, 소외 G, 위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5339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라.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씨의 위 망 E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1657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마.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원고 A, 소외 주식회사 [redacted]개발, 원고 C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바.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의 위 망 E, 원고 C, 소외 망 F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I(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redacted]군에 대한 배당액 881,480원,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4,590,830원, 피고 [redacted]씨(변경 전 : 주식회사 [redacted]공사) 30,874,791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8,053,8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F은 2000. 10. 23.경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들로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J, K, G가 있었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모두 2000. 12. 9.부터 2001. 1. 22.까지 사이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단88호, 2001느단3호, 2000느단90, 91, 95호 등), F 사망 당시 원고 A의 자녀로 L, M, 원고 B의 자녀 N, O, 원고 C의 자녀 P, Q, 원고 D의 자녀 R, S, 소외 J의 자녀 T, U, 소외 K의 자녀 V, W, 소외 G의 자녀 X, Y, Z이 E과 함께 F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redacted]중앙회(이하 '피고 [redacted]협'이라고만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로 원고 A에 대하여 217,048,804원 및 200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하면서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F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E은 원고 A의 위 채무 중 43,409,764원 및 200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8.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redacted]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redacted]보험'이라고만 한다)는 1995. 12. 27. 원고 A와 피보험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기간 1995. 12. 27.부터 2005. 12. 26.까지, 보험금액 193,488,0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F, G, 원고 C는 원고 A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redacted]보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01. 7. 9.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redacted]보험은 2002. 2. 8.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92,806,301원을 지급하였고, E이 F의 상속재산 중 3/5 지분을 상속한다는 전제하에 E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533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5. 30. E은 G, 원고 A, C와 연대하여 120,74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이하 '피고 [redacted]은행'이라고만 한다)은 E, F, 원고 C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고 [redacted]은행에게 33,161,52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로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5. 30.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redacted] 개발, 원고 A, C에 대하여 연대하여 168,325,631원 및 그 중 130,086,78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1. 5.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마. 피고 [redacted]은 F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자 E이 F을 단독상속함을 전제로 E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로 위 나항에서의 F의 연대보증채무 원금에서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로 173,639,040원 및 그 중 170,586,948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피고 [redacted]공사(피고 주식회사 [redacted]씨로 변경, 이하 '피고 [redacted]공사'라고만 한다)는 F의 피고 [redacted]공사에 대한 채무를 E이 3/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함을 전제로 E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1657호로 29,772,346원 및 그 중 20,276,924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피고 [redacted]보험은 2008. 7.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E, 피고 A로, 집행권원을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533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하여 E과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08. 7. 22.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후인 2008. 8. 27. 위 경매법원은 원고 A의 F에 대한 재산상속포기로 인하여 일부 부동산의 지분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집행대상 물건 중 원고 A 소유 지분 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2008. 12. 23. 피고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보험이 집행대상 물건 중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 A 소유 부동산은 집행대상 물건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이후 위 경매법원은 E 소유의 부동산만을 집행대상 물건으로 하고 E만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아. 피고 [redacted]협은 2008.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E, 원고 A로, 집행권원을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하여 E과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08. 10. 29.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하였다. 다만 그 후인 2008. 12. 29.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모두 각하됨으로써 E 소유의 부동산만 집행 대상 물건으로 하고 E만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09. 10. 16. 위 바.항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I 사건을 위 마.항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H 사건에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사., 아.항 각 강제경매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차. E은 2009. 2. 14.경 사망하였는데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 A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느단140호로 2011. 9. 26.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소외 J, K, G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원고 B, C, D는 단순승인 하였다.

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6. 10. 10.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336,540,398원에 대하여 교부권자인 피고 [redacted]군에 881,480원, 교부권자인 피고 [redacted]시에 4,590,830원,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 채권금액 607,364,312원을 신고한 피고 [redacted]협에 92,348,930원,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청채권자로 채권금액 151,841,103원을 신고한 피고 [redacted]협에 23,087,236원, 신청채권자로 303,988,448원을 신고한 피고 [redacted]보험에 46,221,036원,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3845호 가압류권자로써 채권금액 500,000,000원을 신고한 피고 [redacted]공사에 30,874,791원,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1657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 채권금액 79,134,155원을 신고한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씨(이하 '피고 [redacted]씨'라고만 한다)에 12,032,243원,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 채권금액 701,836,500원을 신고한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행(이하 '피고 [redacted]은행'이라고만 한다)에 106,713,300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 채권금액 130,159,334원을 신고한 피고 [redacted]은행에 19,790,5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 A, B는 위 배당기일인 2016. 10. 10.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인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제일은행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 17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redacte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92,348,930원 및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23,087,236원, 피고 [redacted]보험에 대한 소 중 46,221,036원, 피고 [redacted]씨에 대한 소 중 12,032,243원, 피고 [redacted]은행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106,713,330원 및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호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19,790,552원에 관한 각 청구이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edacted]협, [redacted]보험은, 원고가 이 경매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redacted] 보험이 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redacted]협, [redacted]보험에 대한 소 중 배당이의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 중 피고 [redacted]협, [redacted]보험에 관한 부분은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종료한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이와 더불어 원고의 피고 [redacted]씨, [redacted]은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함께 본다.

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강제집행이 일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도 더 이상 청구이의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6.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6. 10. 27.자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로 '피고 [redacted]협의 E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가단3903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피고 [redacted]협의 E, 원고 A 등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2. 8. 23.자 2002차587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피고 [redacted]보험의 E, 원고 A 등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3. 5. 30. 선고 2002가단1533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피고 [redacted]씨의 E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가단416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피고 [redacted]은행의 원고 A 등에 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서울지방법원 2001. 12. 6. 선고 2001가단23169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피고 제일은행의 E 등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 5. 30. 선고 2000가단6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redacted]군에 대한 배당액 881,480원,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4,590,830원, 피고 [redacted]협에 대한 배당액 92,348,930원 및 23,087,236원, 피고 [redacted]보험에 대한 배당액 46,221,036원, 피고 [redacted]공사에 대한 배당액 30,874,791원, 피고 [redacted]씨에 대한 배당액 12,032,243원, 피고 [redacted]은행에 대한 106,713,300원 및 19,790,552원을 각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였다가 2017.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redacted]협, [redacted]보험, [redacted]씨, [redacted]은행에 대한 소 중 각 배당이의의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그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redacted]은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판결에 기하여 92,348,930원 및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3,087,236원, 피고 [redacted]보험은 46,221,036원, 피고 [redacted]씨는 12,032,243원, 피고 [redacted]은행은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판결에 기하여 106,713,300원 및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 판결에 기하여 19,790,552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각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위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redacted]협, [redacted]보험의 각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redacted]협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92,348,930원 및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23,087,236원, 피고[redacted]보험에 대한 소 중 46,221,036원, 피고 [redacted]씨에 대한 소 중 12,032,24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가. 원고들의 주장

F 사망 후 상속인들 중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F의 상속채무를 E이 3/33, 손자녀 15명이 각 2/33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E이 2009. 2. 14. 사망하였는바, 원고들은 F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 중 E의 상속지분인 3/33 지분에 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특히 원고 A는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하여 책임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1)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기했던 주장들 중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한 2017.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현출되지 않은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없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2) 피고 [redacted]협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92,348,930원, 피고[redacted]보험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중 46,221,036원, 피고 [redacted]씨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중 12,032,24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인 F의 자녀들의 상속포기는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redacted]협, [redacted]보험, [redacted]씨의 집행권원이 된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15339호,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1657호 각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에 생긴 것이므로, 위 각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 부분에 한하여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자녀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redacted]협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지급명령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23,087,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사망 후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E이 3/33, 손자녀 총 15명이 각 2/33의 상속지분비율로 F을 공동상속하게 되었고, E 사망 후 원고 A는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redacted]협에 대하여 F의 원고 A 연대보증채무액 원금 217,048,804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5.부터의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3/33(E의 F에 대한 상속비율)을 E의 피고 [redacted]협에 대한 채무로써 상속한다 할 것인데, 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6. 10. 10. 현재 발생한 이자는 50,521,825원이고[2](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23,087,236원의 범위 내에서 이미 종료하였는바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위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47,166,298원[원금 19,731,709원(217,048,804원 × 3/33) + 이자 27,434,589원(50,521,825원 - 23,087,236원)] 및 그 중 원금 19,731,709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363%(18% × 3/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이를 불허하되(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에 더하여 원고 A의 경우 그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555,740,082원 = 원금 217,048,804원 × 5,192일(2002. 7. 25.부터 2016. 10. 10.까지)/365일 × 연 18% × 3/33. 피고 [redacted]협이 이 사건 경매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갑 제6호증의 2)는 피고 농협이 2016. 11. 12.자 준비서면에서 착오로 잘못 제출된 것이라 진술하였는바, 위 채권계산서상의 이자와 비용에 관한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4. 원고들의 피고 [redacted]은행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106,713,330원 및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 중 19,790,55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

피고 [redacted]은행의 원고 A, C, 소외 주식회사 [redacted]개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판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redacted]대부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 [redacted]은행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집행이 종료된 106,713,3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불허하고[3], 피고 [redacted]은행의 E, C, F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집행이 종료된 19,790,552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불허하되, 이에 더하여 원고 A의 경우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해야 한다(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5. 원고들의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 [redacted]공사에 대한 배당이의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가 소멸시효가 경과된 E에 대한 지방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주장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배당이의사유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3) 2017.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청구취지에서 원고 B, D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원고 A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함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 A, C, 소외 주식회사 [redacted]개발일 뿐 E은 없는 점, 청구원인(2017. 6. 26.자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상 위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를 함에 있어 이의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취지 중 원고 B, D의 청구 및 원고 A의 위 상속한정승인에 기하여 책임제한을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330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의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redacted]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redacted]공사가 F과 원고 D를 상대로 2003. 6. 12.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3845호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라 한다)결정만 받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경과하여 위 부동산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 [redacted]공사는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3) 판단

갑 제12, 19, 22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redacted]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의 원인채권인 F에 대한 채권을 상속한 E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948호, 2006가단41657호 등으로 각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 [redacted]공사의 위 부동산 가압류에 의한 기입등기는 2011. 4.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redacted]공사가 위 부동산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948호 사건의 판결은 2006. 2. 1., 위 2006가단41657호 사건의 판결은 2007. 7. 21. 각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부동산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2011. 4. 19.까지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redacted]협에 대한 소 중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39038호 판결에 기한 92,348,930원 및 전주지방법원 2002차5874호 지급명령에 기한 23,087,236원, 피고 [redacted]보험에 대한 소 중 46,221,036원, 피고 [redacted]씨에 대한 소 중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41657호 판결에 기한 12,032,243원, 피고 [redacted]은행에 대한 소 중 서울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방법원 2001가단231697호 판결에 기한 106,713,300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0가단660호 판결에 기한 19,790,552원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redacted]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redacted]협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redacted]협, [redacted]보험, [redacted]씨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redacted]군, [redacted]시, [redacted]공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봉규

판사 정성화

판사 유인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별지1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도 [redacted]군
대 221㎡

2. [redacted]도 [redacted]군
답 1279㎡

3. [redacted]도 [redacted]군
답 132㎡

4. [redacted]도 [redacted]군
답 918㎡

5. [redacted]도 [redacted]군
도로 20㎡

6. [redacted]도 [redacted]군
대 226㎡

7. [redacted]도 [redacted]시
대 448㎡

8. [redacted]도 [redacted]시
전 684㎡

9. [redacted]도 [redacted]시
대 19㎡

10. [redacted]도 [redacted]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4.79㎡

11. [redacted]도 [redacted]시

답 2662㎡

12. [redacted]도 [redacted]시

위 지상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9평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창고 및 변소

1평1홉

13. [redacted]도 [redacted]시

위 지상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9평

부속건물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창고 및 변소

1평 1홉

14. [redacted]도 [redacted]시

위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100평

15. [redacted]도 [redacted]시

대 149㎡

16. [redacted]도 [redacted]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72.42㎡

부속건물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 2.64㎡

17. [redacted]도 [redacted]시

대 5㎡

18. [redacted]도 [redacted]시

대 143㎡

19. [redacted]도 [redacted]시

대 94㎡

20. [redacted]도 [redacted]시

위 지상

2호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6.12㎡

시멘트 블록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58.18㎡

21. [redacted]도 [redacted]군

전 17㎡

22. [redacted]도 [redacted]군

도로 16㎡

23. [redacted]도 [redacted]군

전 33㎡

24. [redacted]도 [redacted]군

임야 1993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0

25. [redacted]도 [redacted]군

임야 44727㎡

26. [redacted]도 [redacted]군

임야 21620㎡

이상.